

부록

1_ 하천수 사용료 제도 관련 전문가 인식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정책현안에 관한 조사분석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도시정책 종합연구기관입니다.

정부는 2015년 발생한 대규모 가뭄 이후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천수 사용료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수도사업의 공공성 및 하천수 사용료 제도 인식, 국내 수자원 여건 인식 등의 내용을 여쭙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11월

주관 연구기관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조사 수행기관	(주)리서치플러스

■ 응답자 기초 사항

SQ1	기관 유형	▶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학계(대학) ② 환경 및 시민단체 ③ 전문용역 컨설팅 기관 ④ 연구기관(사설) ⑤ 연구기관 (국가, 지자체, 공사 산하) (☐ ☑ 조사 중단)
SQ2	연구 분야	▶ 귀하께서 현재 주로 수행하고 계시는 연구 분야는 무엇입니까? 연구 분야가 복수일 경우는 비중이 큰 연구 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상수도 관련 ② 수자원/물산업 관련 ③ 하천공학 관련 ④ 환경계획/정책 ⑤ 하천계획/정책 ⑥ 행정법 관련 ⑦ 헌법/민법/환경법 관련 ⑧ 지방자치/공공정책/공공개혁 관련 ⑨ 기타 (_____)

PART A. 수도사업의 공공성 관련 인식

A1. 귀하께서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사업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영리적 사업(비영리성)이란?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익을 구성원이 향유하지 않는 공익 목적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비영리적 사업은 수익성, 사업규모, 조직/운영 형태, 사업 지속성 및 반복성을 토대로 비영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① 수도사업은 매우 비영리적인 공익사업이다 ② 수도사업은 다소 비영리적인 공익사업이다
 ③ 수도사업은 다소 영리적인 공익사업이다 ④ 수도사업은 매우 영리적인 공익사업이다

[A1번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에만 A1-1번 질문]

A1-1. 귀하께서는 수도사업이 **'비영리적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시민의 생활 영위를 목적에 둔 사업이다 (사업의 공공성)
 ②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의 공공성)
 ③ 징수된 요금은 수도 관련 기반시설에 다시 투자되는 사업이다 (사회 환원적 성격)
 ④ 수익성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낮다 (낮은 수익성)

[A1번에서 ③, ④에 응답한 경우에만 A1-2번 질문]

A1-2. 귀하께서는 수도사업이 **'영리적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자금·회계 관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회계의 독립성)
 ② 수도사업 운영방식이 기업의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사업 운영방식)
 ③ 조직 유지를 위해 수익으로 일정 비용을 지속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수익성 비배제)
 ④ 수도 서비스 공급을 통해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의 시장 구조적 성격이 있다 (서비스 성격)
 ⑤ 수도사업은 생활의 영위 목적 외에 사업적으로도 공급될 수 있다 (공급대상 다양성)

A2. 귀하께서는 정부에서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 다소 적절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A2번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에만 A2-1번 질문]

A2-1. 귀하께서는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 징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공익목적으로 하천수를 취수하므로 사용료 징수는 부적절하다
- ② 징수에 의한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올 것 같다
- ③ 수자원 관리는 사용료 징수와 같은 금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수자원 여건이 양호해 사용료 징수가 불필요하다
- ⑤ 기타 (_____)

[A2번에서 ④, ⑤에 응답한 경우에만 A2-2번 질문]

A2-2. 귀하께서는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 징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수도사업은 영리사업이기 때문이다
- ② 징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 같다
- ③ 수자원을 사용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④ 수자원 여건이 열악해 규제가 불가피하다
- ⑤ 기타 (_____)

A3. 귀하께서는 수도사업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아래의 내용에 대해 동의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구분	하천수 사용료 징수 관련 반대 의견	동의 정도					하천수 사용료 징수 관련 찬성 의견
		← 반반 →					
비영리성	수도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이므로 하천수 사용료 징수 대상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수도사업의 운영 성격상 영리적이기 때문에 하천수 사용료 징수 대상이다
수자원 여건	수자원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므로 하천수 사용료 징수를 통한 규제는 불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수자원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어 하천수 사용료 징수를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
가계 상황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요금 상승으로 인해 시민의 가계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①	②	③	④	⑤	시민의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더라도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 A4. 귀하께서는 현재 수도사업의 성격인 **비영리성, 공익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사업 성격에 맞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② 사업 성격에 맞도록 어느 정도는 개정되어야 한다
 ③ 현재 법령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
 ④ 반드시 현재 법령을 유지해야 한다
- A5. 현재 하천수 사용료 감면 기준 중에서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의 범위를 재해 복구 및 하천 유지·관리·공사, 교육기관(학교)의 설립, 군사작전 등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사업이 **하천수 사용료 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 A6. 귀하께서는 하천수 사용료 감면 기준 중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 범위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사업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PART B. 하천수 사용료 관리주체 관련 인식

- B1. 귀하께서는 하천수 사용료의 **허가권자와 징수권자가 분리**되어 있는 관리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보기에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수 사용 허가권자와 사용료 징수권자 (관계 법령 ‘하천법’)

1. 하천수 사용 허가권자 : 하천수 사용 허가권자를 국가(국토교통부 장관)로 규정
2.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자 :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자를 지방자치단체(사도지사)로 규정

- ① 허가권자와 징수권자를 구분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와 징수권자를 통합해야 한다
- B2. 귀하께서는 만약 하천수 사용료 **허가권자와 징수권자를 통합**한다면 **국가 또는 사도지사 중 어느** **도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가(국토교통부 장관)로 통합되어야 한다 (☞ B2-1번으로)
 ② 지방자치단체(사도지사)로 통합되어야 한다 (☞ B2-2번으로)

[B2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B2-1번 질문]

B2-1. 귀하께서는 허가권자와 징수권자를 국가(국토교통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① 법적으로 수자원 관리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 ② 통합적으로 수자원 관리를 할 수 있어 관리 효율성이 높다
- ③ 지자체로 허가징수권이 통합될 경우 수자원 낭비가 조장될 수 있다
- ④ 지자체로 허가징수권이 통합될 경우 지자체간 물배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허가업무가 하천 관리의 핵심이므로 허가권자인 국가로 통합해야 한다
- ⑥ 기타 (_____)

[B2번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B2-2번 질문]

B2-2. 귀하께서는 허가권자와 징수권자를 지방자치단체(사도지사)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① 사무를 담당하는 실질적 운영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사도지사)이기 때문이다
- ② 지역실정에 맞게 수자원 관리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국가가 담당하는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되어야 한다
- ④ 업무의 엄정성 보다는 시민의 생활기본권을 더욱 보장할 것 같다
- ⑤ 징수업무가 하천 관리의 핵심이므로 징수권자인 지방자치단체(사도지사)로 통합되어야 한다
- ⑥ 기타 (_____)

B3. 귀하께서는 한강 하구의 하천관리청 주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보기에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관리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며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사도)입니다. 하천관리청은 관할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법정 계획의 수립권자이며, 하천수 사용료 감면권자이기도 합니다. 한강 하구의 법적 하천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지만 하천 점용료 징수업무 및 관리업무는 관행적으로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① 한강 하구의 하천관리청은 국가(국토교통부)라고 생각한다 (☞ B3-1번으로)
- ② 한강 하구의 하천관리청은 지자체(서울시)라고 생각한다 (☞ B3-2번으로)

[B3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B3-1번 질문]

B3-1. 귀하께서는 한강 하구의 하천관리청은 국가(국토교통부)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① 법적으로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은 국가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다
- ② 한강은 국가하천으로 실무의 담당여부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 ③ 하천관리청을 서울시로 인정할 경우 감면 재량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법정계획수립권자로 계획에 맞는 일관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 ⑤ 기타 (_____)

[B3번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B3-2번 질문]

B3-2. 귀하께서는 한강 하구의 하천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서울시)라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① 하천관리청의 법적 업무를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지역실정에 맞게 한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하천관리청이 되어야 한다
- ③ 시민의 생존을 배려할 수 있는 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합하다
- ④ 법정계획수립권자와 시책의 시행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 ⑤ 기타 (_____)

B4. 귀하께서는 기득수리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보기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득수리권이란? (법령근거는 ‘댐건설법’이며, ‘하천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기득수리권은 ‘하천법’ 및 ‘댐건설법’ 제정 이전부터 취수해오던 관행적인 권리로 수도용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해당됩니다.
 기득수리권에 의해 이용되는 물은 무상입니다. 또한, 가뭄과 같이 수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물이용을 제한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하천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허가(허가수리권)를 받아야 하지만, 기득수리권은 별도의 허가를 거치지 않아 현 제도와 대치됩니다.

- ① 기득수리권은 존치되어야 한다 (☞ B4-1번으로)
- ② 기득수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 B4-2번으로)

[B4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B4-1번 질문]

B4-1. 귀하께서는 기득수리권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① 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② 수도사업, 농업과 같이 국가의 기반에 필요한 물이용권이기 때문이다
- ③ 기득수리권이 폐지된다면 현재보다 금전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기득수리권이 폐지된다면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 ⑤ 기타 (_____)

[B4번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B4-2번 질문]

B4-2. 귀하께서는 기득수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① 하천수는 하천법에 의해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② 특정분야에 배타적 권한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③ 기득수리권이 존치된다면 수자원 배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기득수리권이 존치된다면 엄정한 행정이 어려워 질수 있기 때문이다
- ⑤ 기타 (_____)

B5. 귀하께서는 만약 기득수리권을 폐지해야 한다면 이용권 침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득수리권 침해에 따른 보상

"하천법"에는 기득수리권의 권리행사가 침해 받을 경우 침해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자원의 배분을 위해 수도사업자가 취득한 기득수리권을 폐지할 경우의 권리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실을 보상해야 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 ① 보상해야 한다 (☞ B5-1번으로)
- ②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 B5-2번으로)

[B5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B5-1번 질문]

B5-1. 귀하께서는 기득수리권 폐지 시 침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① 기득수리권 행사 침해 시 보상할 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기득수리권은 수도사업자 등 국가의 기반에 필요한 물이용권이기 때문이다
- ③ 기득수리권 폐지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 부담을 시민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 ④ 기득수리권 폐지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⑤ 기타 (_____)

[B5번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 B5-2번 질문]

B5-2. 귀하께서는 기득수리권 폐지 시 침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① 보상과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 ② 수자원 여건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권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 ③ 물이용의 형평성을 위해 절대적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 ④ 수자원은 국가자원으로 국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⑤ 기타 (_____)

PART C. 댐용수 사용계약방식 관련 인식

C1. 귀하께서는 수도사업자가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댐 운영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하는 댐용수 사용계약에 있어 민간과 공공단체를 구분하지 않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댐용수(댐에 저장된 물) 사용계약**
 댐용수는 댐의 건설·운영으로 증가된 물로 댐에 의해 저장된 물을 의미합니다.
 댐용수를 사용하려면 댐의 건설과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댐용수 사용계약은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과 요금으로 체결합니다.

- ①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 업무로 민간과 체결하는 계약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수도사업이 지자체 고유 업무라도 물 이용자라는 측면에서 민간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현행 계약방식은 적절하다

C2. 귀하께서는 수도사업자가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댐 운영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댐용수 사용계약 체결 시 적용하는 사용요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댐용수 사용료**
 취수지역, 목적, 용도의 구분 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해 52.7원/m³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된 요금은 댐 건설 및 댐 운영관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① 수도사업은 시민의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 또는 계약자와 구분하여 요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현 요금산정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② 다른 용도 또는 계약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요금산정방식은 적절하다

C3. 귀하께서는 **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계약 관계**와 관련한 아래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비동의	다소 비동의	보통	다소 동의	매우 동의
1) 현행 댐용수 계약방식은 지자체의 행정을 고려하지 않아 지방자치제도와 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수도사업은 시민의 생존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현 계약 방식과는 다른 계약방식을 취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사업자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댐의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을 다른 이용자와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수도사업은 국가자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다른 계약당사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계약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사업을 위한 새로운 계약방식의 도입은 불공평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수도사업자는 댐 개발로 인해 증가된 물을 사용하므로 댐의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용자와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C4. 귀하께서는 댐용수 사용료의 집행 시 댐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을 **초과하여 징수된 사용료**에 대해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 하천 유지관리 재원으로 이전** 활용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댐용수 사용료의 집행**

댐용수 사용료는 「댐건설법」에 의해 댐의 건설비와 유지관리, 댐 건설에 따른 건설부지 인근 시민의 피해복구에만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까지 징수된 댐용수 사용료가 이미 댐건설비용을 초과하였으므로 유지관리 비용을 제외한 사용료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매우 부적절

② 다소 부적절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적절

⑤ 매우 적절

C5. 귀하께서는 지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댐용수 사용료 요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댐용수 사용료 동일단가 적용**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한국수자원 공사는 취수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일단가를 적용할 경우 물을 공급받는 댐 이외에 다른 지역의 댐 건설 및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① 지역, 허가량 등 수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이 동일한 적용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PART D. 하천수 사용료 제도 개선 평가 인식

※ 하천수 사용료 제도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은 크게 1) 기득수리권 병존, 2) 관리주체 이원화, 3) 댐용수 계약 방식, 4) 수도사업 요금감면 관련 문제 등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D1. 귀하께서는 다음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	세부 설명	개선 필요 정도				
		매우 불필요	다소 불필요	보통	다소 필요	매우 필요
기득수리권 병존	기득수리권과 허가수리권이 병존함에 따라 수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수자원 보전이 어려움 ※ 기득수리권은 사용료 면제를 받고, 조정이 어려운 배타적인 권리로 재산권이 인정됨	①	②	③	④	⑤
관리주체 이원화	하천수 사용허가권은 국토교통부에 있으며,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①	②	③	④	⑤
댐용수 계약 방식	댐건설 및 관리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간 사인적(개인 간 계약, 거래) 계약방식과 동일한 요금 적용 문제가 있음	①	②	③	④	⑤
요금 감면 범위 축소 갈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금감면 조항을 시행령에 입법적 근거 없이 재량적으로 축소, 수도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감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①	②	③	④	⑤

D2. 귀하께서는 하천수 사용료 제도 관련 각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현실적인 개선 가능성				
	매우 낮음	다소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매우 높음
1) 기득수리권 병존	①	②	③	④	⑤
2) 관리 주체 이원화	①	②	③	④	⑤
3) 댐용수 계약방식	①	②	③	④	⑤
4) 요금 감면 범위 축소 갈등	①	②	③	④	⑤

[D2번의 1) 기득수리권 병존 - 개선 가능성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 D2-1번 질문]

D2-1. 귀하께서는 ‘기득수리권 병존’ 문제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① 이해당사자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
- ② 현행 법령 및 제도체계 적절성
- ③ 법령 개선의 어려움
- ④ 해결 위한 협의체의 역할 미흡
- ⑤ 개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민부담 증가
- ⑥ 해당 요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 ⑥ 기타 (_____)

[D2번의 2) 관리주체 이원화 - 개선 가능성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 D2-2번 질문]

D2-2. 귀하께서는 ‘관리주체 이원화’와 관련하여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① 이해당사자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
- ② 현행 법령 및 제도체계 적절성
- ③ 법령 개선의 어려움
- ④ 해결 위한 협의체의 역할 미흡
- ⑤ 개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민부담 증가
- ⑥ 해당 요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 ⑥ 기타 (_____)

[D2번의 3) 댐용수 계약방식 - 개선 가능성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 D2-3번 질문]

D2-3. 귀하께서는 ‘댐용수 계약방식 문제’와 관련하여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① 이해당사자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
- ② 현행 법령 및 제도체계 적절성
- ③ 법령 개선의 어려움
- ④ 해결 위한 협의체의 역할 미흡
- ⑤ 개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민부담 증가
- ⑥ 해당 요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 ⑥ 기타 (_____)

[D2번의 4) 요금 감면 범위 축소 - 개선 가능성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 D2-4번 질문]

D2-4. 귀하께서는 '요금감면 범위축소'와 관련하여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응답)

- ①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 예상되므로 ② 법령 개선을 위한 높은 소요
 ③ 해결 위한 협의체의 역할 미흡 ④ 해당 요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⑤ 기타 (_____)

D3-1. 하천수 사용료 제도에 대한 4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보기에 제시된 개선 방안에 대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적절한 순서대로 2개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 ① 기득수리권 폐지 및 허가수리권으로의 통합
 ② 기득수리권 폐자통합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 마련
 ③ 허가권자 징수권을 지자체(사도지사)로 통합
 ④ 댐용수 사용 계약 시 지방행정에 맞는 공적계약 방식 마련
 ⑤ 댐용수 사용 계약 시 지방행정에 맞는 요금 적용방식 마련
 ⑥ 수도사업자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
 ⑦ 기타 (_____)

D3-2. 귀하께서는 보기에 제시된 개선 방안에 대해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개선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2개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 ① 기득수리권 폐지 및 허가수리권으로의 통합
 ② 기득수리권 폐자통합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 마련
 ③ 허가권자 징수권을 지자체(사도지사)로 통합
 ④ 댐용수 사용 계약 시 지방행정에 맞는 공적 계약방식 마련
 ⑤ 댐용수 사용 계약 시 지방행정에 맞는 요금 적용방식 마련
 ⑥ 수도사업자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
 ⑦ 기타 (_____)

D4-1.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6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수자원 보전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 ① 기득수리권 폐지 및 허가수리권으로의 통합
- ② 기득수리권 폐자통합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 마련
- ③ 허가권자 징수권을 지자체(사도지사)로 통합
- ④ 댐용수 사용 계약 시 지방행정에 맞는 공적 계약방식 마련
- ⑤ 댐용수 사용 계약 시 지방행정에 맞는 요금 적용방식 마련
- ⑥ 수도사업자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
- ⑦ 기타 (_____)

D4-2.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6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권 보장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 ① 기득수리권 폐지 및 허가수리권으로의 통합
- ② 기득수리권 폐자통합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 마련
- ③ 허가권자 징수권을 지자체(사도지사)로 통합
- ④ 댐용수 사용 계약 시 지방행정에 맞는 공적 계약방식 마련
- ⑤ 댐용수 사용 계약 시 지방행정에 맞는 요금 적용방식 마련
- ⑥ 수도사업자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
- ⑦ 기타 (_____)

D4-3.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6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생존배려행정(환경기본권, 물인권)’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 ① 기득수리권 폐지 및 허가수리권으로의 통합
- ② 기득수리권 폐자통합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 마련
- ③ 허가권자 징수권을 지자체(사도지사)로 통합
- ④ 댐용수 사용 계약 시 지방행정에 맞는 공적 계약방식 마련
- ⑤ 댐용수 사용 계약 시 지방행정에 맞는 요금 적용방식 마련
- ⑥ 수도사업자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
- ⑦ 기타 (_____)

D5. 귀하께서는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6가지 개선 방안 중 헌법에 규정된 수자원 보전, 지방자치권 보장, 시민의 생존배려행정(환경기본권, 물인권) 등의 **종합적인 가치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 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 ① 기득수리권 폐지 및 허가수리권으로의 통합
- ② 기득수리권 폐자통합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 마련
- ③ 허가권자 징수권을 지자체(사도지사)로 통합
- ④ 댐용수 사용 계약 시 지방행정에 맞는 공적 계약방식 마련
- ⑤ 댐용수 사용 계약 시 지방행정에 맞는 요금 적용방식 마련
- ⑥ 수도사업자에 대한 하천수 사용료 면제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및 신설
- ⑦ 기타 (_____)

PART E. 국내 수자원 여건 및 제도개선 관련 인식

E1. 귀하께서는 현재 **국내의 수자원 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수자원이 매우 부족하다
- ② 수자원이 다소 부족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수자원이 다소 풍부하다
- ⑤ 수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E2. 귀하는 현재 국내 수자원 여건을 고려할 때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수도를 포함한 **물 절약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 없다
- ② 별로 필요 없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E3. 귀하께서는 장래에 **국내 수자원 여건상** 하천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하천수의 양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매우 감소할 것이다
- ② 다소 감소할 것이다
- ③ 현 상태 유지
- ④ 다소 증가할 것이다
- ⑤ 매우 증가할 것이다

E4. 귀하께서는 현행 하천수 사용료 제도에 대해 **헌법적 가치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문장에 대해 **현행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반영 정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헌법적 가치	현행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헌법적 가치 반영 정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별로 반영하지 못했다	보통	다소 잘 반영했다	매우 잘 반영했다	잘 모르겠다
국가자원 관리 차원	국가 주도적인 수자원의 보전과 함양을 통해 현재와 미래 수요를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지방자치권 차원	지방자치시대에 지방고유의 사무와 지위를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환경권 (기본권) 차원	시민에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지불 가능한 수준에서 공급	①	②	③	④	⑤	⑥

E5. 귀하께서는 현행 하천수 사용료 **제도 개선 시 어떠한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① 국가자원의 국가 주도적 통합 관리
- ② 지방자치권의 보장
- ③ 시민의 기본권(환경권, 물 인권) 보장

E6. 하천수 사용료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제안하실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Web 설문 개발 시 무응답인 경우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

※ 마지막으로 통계 분류를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자의 특성 정보 및 통계 분류를 위해 작성해 주신 응답 내용은 연구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 변수로만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다른 용도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Q2. 귀하의 직급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원급	[학계] 학생 연구원, 연수 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연구기관] 연구원, 위촉연구원
② 선임급	[학계] 조교수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팀장
③ 책임급 이상	[학계] 부교수, 학과장, 정교수, 학장, 처장, 총장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실장, 센터장, 부장, 본부장, 소장, 원장

Q3. 귀하께서는 귀하가 주력하는 담당/연구 분야에서 연구를 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3년 미만 ② 3~5년 미만 ③ 5~10년 미만
④ 10~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2_하천수 사용료 제도 관련 시민 인식 설문조사

<p>안녕하십니까?</p> <p>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정책현안에 관한 조사·분석·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도시정책 종합연구기관입니다.</p> <p>정부는 2015년 발생한 대규모 가뭄 이후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p> <p>이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천수 사용료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수도사업의 공공성 및 하천수 사용료 제도 인식, 국내 수자원 여건 인식 등의 내용을 여쭙고자 합니다.</p> <p>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p> <p>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11월</p>	
주관 연구기관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조사 수행기관	(주)리서치플러스

■ 응답자 기초 사항

SQ1	가계비 관리	<p>▶ 귀댁의 가계 관리비(전기료, 수도요금, 각종 공과금 등)는 주로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 ① 응답자만 조사 진행)</p> <p>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부모님</p> <p>④ 자녀 ⑤ 기타</p>
SQ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3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SQ4	거주 지역 (☑ 쿼터확인)	<p>① 종로구 ② 중구 ③ 용산구</p> <p>④ 성동구 ⑤ 광진구 ⑥ 동대문구</p> <p>⑦ 중랑구 ⑧ 성북구 ⑨ 강북구</p> <p>⑩ 도봉구 ⑪ 노원구 ⑫ 은평구</p> <p>⑬ 서대문구 ⑭ 마포구 ⑮ 양천구</p> <p>⑯ 강서구 ⑰ 구로구 ⑱ 금천구</p> <p>⑲ 영등포구 ⑳ 동작구 ㉑ 관악구</p> <p>㉒ 서초구 ㉓ 강남구 ㉔ 송파구</p> <p>㉕ 강동구</p>

PART A. 수도사업의 공공성 관련 인식

A1. 귀하께서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사업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영리적 사업 (비영리성) 이란?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이익을 구성원이 향유하지 않는 공익 목적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비영리적 사업은 수익성, 사업규모, 조직/운영 형태, 사업 지속성 및 반복성을 토대로 비영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① 수도사업은 매우 비영리적인 공익사업이다 ② 수도사업은 다소 비영리적인 공익사업이다
 ③ 수도사업은 다소 영리적인 공익사업이다 ④ 수도사업은 매우 영리적인 공익사업이다

[A1번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에만 A1-1번 질문]

A1-1. 귀하께서는 수도사업이 **‘비영리적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시민의 생활 영위를 목적에 둔 사업이다 (사업의 공공성)
 ②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의 공공성)
 ③ 징수된 요금은 수도 관련 기반시설에 다시 투자되는 사업이다 (사회 환원적 성격)
 ④ 수익성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낮다 (낮은 수익성)

[A1번에서 ③, ④에 응답한 경우에만 A1-2번 질문]

A1-2. 귀하께서는 수도사업이 **‘영리적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① 자금·회계 관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회계의 독립성)
 ② 수도사업 운영방식이 기업의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사업 운영방식)
 ③ 조직 유지를 위해 수익으로 일정 비용을 지속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수익성 비배제)
 ④ 수도 서비스 공급을 통해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의 시장 구조적 성격이 있다 (서비스 성격)
 ⑤ 수도사업은 생활의 영위 목적 외에 사업적으로도 공급될 수 있다 (공급대상 다양성)

A2. 귀하께서는 정부에서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지 않다 ② 다소 적절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A2번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에만 A2-1번 질문]

A2-1. 귀하께서는 수도사업 하천수 사용료 징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공익목적으로 하천수를 취수하므로 사용료 징수는 부적절하다
- ② 징수에 의한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올 것 같다
- ③ 수자원 관리는 사용료 징수와 같은 급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수자원 여건이 양호해 사용료 징수가 불필요하다
- ⑤ 기타 (_____)

[A2번에서 ④, ⑤에 응답한 경우에만 A2-2번 질문]

A2-2. 귀하께서는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 징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수도사업은 영리사업이기 때문이다
- ② 징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 같다
- ③ 수자원을 사용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④ 수자원 여건이 열악해 규제가 불가피하다
- ⑤ 기타 (_____)

A3. 귀하께서는 수도사업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아래의 내용에 대해 동의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구분	하천수 사용료 징수 관련 반대 의견	동의 정도					하천수 사용료 징수 관련 찬성 의견
		←	반반			→	
비영리성	수도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이므로 하천수 사용료 징수 대상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수도사업의 운영 성격상 영리적이기 때문에 하천수 사용료 징수 대상이다
수자원 여건	수자원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므로 하천수 사용료 징수를 통한 규제는 불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수자원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어 하천수 사용료 징수를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
가계 상황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요금 상승으로 인해 시민의 가계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①	②	③	④	⑤	시민의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더라도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수도사업에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A4. 귀하께서는 현재 수도사업의 성격인 **비영리성, 공익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사업 성격을 맞도록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② 사업 성격을 맞도록 어느 정도는 개정되어야 한다
- ③ 현재 법령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
- ④ 반드시 현재 법령을 유지해야 한다

A5. 현재 하천수 사용료 감면 기준 중에서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의 범위를 재해 복구 및 하천 유지·관리·공사, 교육기관(학교)의 설립, 군사작전 등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수도물을 공급하는 수도사업이 **하천수 사용료 감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적절하다
- ⑤ 매우 적절하다

A6. 귀하께서는 하천수 사용료 감면 기준 중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 범위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수도사업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 ② 별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적절하다
- ⑤ 매우 적절하다

PART B. 수도요금 관련 인식

B1. 귀 닥에서는 평소에 세면이나 샤워, 설거지, 세탁, 정원 물주기 등의 **수도사용 전반에 대해 사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적은 편이다
- ② 다소 적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많은 편이다
- ⑤ 매우 많은 편이다

B2. 귀 닥에서는 **최근 6개월(2017년 6월 ~ 10월) 동안 발생한 수도 요금**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 ① 1만 원 미만
- ② 1~2만 원 이하
- ③ 3~4만 원 이하
- ④ 5~6만 원 이하
- ⑤ 7만 원 이상

B3. 귀 닻에서는 최근 6개월(2017년 6월 ~ 10월) 동안 납부하신 수도 요금이 가계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① 5% 미만 ② 5~10% 미만 ③ 10~20% 미만
- ④ 20~30% 미만 ⑤ 30% 초과

B4. 귀하께서는 현재 부과되는 수도 요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저렴하다 ② 다소 저렴하다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비싸다 ⑤ 매우 비싸다

B5. 귀하께서는 귀 닻의 가계상황을 비추어 볼 때 수도요금이 얼마나 부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담되는 수준이다 ② 다소 부담되는 수준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부담 없는 수준이다 ⑤ 전혀 부담 없는 수준이다

B6. 귀하께서는 가장 최근(2017년 10월)에 납부하신 수도요금은 얼마입니까? (_____)천 원

B7. 귀하께서는 평소예 수도 요금을 줄이기 위해 수돗물을 아껴 사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B8. 귀하께서는 만약에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따른 향후 납부해야 할 연간 수도요금에 상승해야 한다면 다음의 질문에 대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연간 수도요금 인상 금액이 너무 싸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2) 연간 수도요금 인상 금액이 다소 싸다고 생각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3) 연간 수도요금 인상 금액이 다소 비싸다고 생각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4) 연간 수도요금 인상 금액이 너무 비싸서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생각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 너무 싸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연간 수도요금 인상 금액	2) 다소 싸다고 생각되는 연간 수도요금 인상 금액	3) 다소 비싸다고 생각되는 연간 수도요금 인상 금액	4) 너무 비싸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연간 수도요금 인상 금액
1)	500원	500원	500원	500원
2)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3)	2,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4)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5)	4,000원	4,000원	4,000원	4,000원
6)	5,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7)	6,000원	6,000원	6,000원	6,000원
8)	7,000원	7,000원	7,000원	7,000원
9)	8,000원	8,000원	8,000원	8,000원
10)	9,000원	9,000원	9,000원	9,000원
11)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2)	11,000원	11,000원	11,000원	11,000원
13)	12,000원	12,000원	12,000원	12,000원
14)	13,000원	13,000원	13,000원	13,000원
15)	14,000원	14,000원	14,000원	14,000원
16)	15,000원	15,000원	15,000원	15,000원
17)	16,000원	16,000원	16,000원	16,000원
18)	17,000원	17,000원	17,000원	17,000원
19)	18,000원	18,000원	18,000원	18,000원
20)	19,000원	19,000원	19,000원	19,000원
21)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2)	그 이상 (원)	그 이상 (원)	그 이상 (원)	그 이상 (원)

B9. 귀하께서는 만약에 **향후 수도요금이 연간 5% 인상된다면** 귀댁의 가계상황에 **얼마나 부담**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래의 인상시점별로 보기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부담된다	다소 부담된다	보통	별로 부담 안된다	전혀 부담 안된다
1) 1년 뒤 연간 5% 인상	①	②	③	④	⑤
2) 3년 뒤 연간 5% 인상	①	②	③	④	⑤
3) 5년 뒤 연간 5% 인상	①	②	③	④	⑤
4) 7년 뒤 연간 5% 인상	①	②	③	④	⑤
5) 10년 뒤 연간 5% 인상	①	②	③	④	⑤

B10. 귀하께서는 만약에 **향후 수도요금이 연간 10% 인상된다면** 귀댁의 가계상황에 **얼마나 부담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래의 인상시점별로 보기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부담된다	다소 부담된다	보통	별로 부담 안된다	전혀 부담 안된다
1) 1년 뒤 연간 10% 인상	①	②	③	④	⑤
2) 3년 뒤 연간 10% 인상	①	②	③	④	⑤
3) 5년 뒤 연간 10% 인상	①	②	③	④	⑤
4) 7년 뒤 연간 10% 인상	①	②	③	④	⑤
5) 10년 뒤 연간 10% 인상	①	②	③	④	⑤

B11. 귀하께서는 만약에 **향후 수도요금이 연간 15% 인상된다면** 귀댁의 가계상황에 **얼마나 부담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래의 인상시점별로 보기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부담된다	다소 부담된다	보통	별로 부담 안된다	전혀 부담 안된다
1) 1년 뒤 연간 15% 인상	①	②	③	④	⑤
2) 3년 뒤 연간 15% 인상	①	②	③	④	⑤
3) 5년 뒤 연간 15% 인상	①	②	③	④	⑤
4) 7년 뒤 연간 15% 인상	①	②	③	④	⑤
5) 10년 뒤 연간 15% 인상	①	②	③	④	⑤

PART C. 국내 수자원 여건 및 제도개선 관련 인식

C1. 귀하께서는 현재 **국내의 수자원 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수자원이 매우 부족하다 ② 수자원이 다소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수자원이 다소 풍부하다 ⑤ 수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C2. 귀하는 현재 국내 수자원 여건을 고려할 때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수도를 포함한 **물 절약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별로 필요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C3. 귀하께서는 장래에 **국내 수자원 여건상** 하천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하천수의 양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매우 감소할 것이다 ② 다소 감소할 것이다 ③ 현 상태 유지
④ 다소 증가할 것이다 ⑤ 매우 증가할 것이다

C4. 귀하께서는 현행 하천수 사용료 제도에 대해 **헌법적 가치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문장에 대해 **현행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반영 정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헌법적 가치	현행 하천수 사용료 제도의 헌법적 가치 반영 정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별로 반영하지 못했다	보통	다소 잘 반영했다	매우 잘 반영했다	잘 모르겠다
국가자원 관리 차원	국가 주도적인 수자원의 보전과 함양을 통해 현재와 미래 수요를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지방자치권 차원	지방자치시대에 지방고유의 사무와 지위를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환경권 (기본권) 차원	시민에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지불 가능한 수준에서 공급	①	②	③	④	⑤	⑥

C5. 귀하께서는 현행 하천수 사용료 **제도 개선 시 어떠한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 ① 국가자원의 국가 주도적 통합 관리 ② 지방 자치권의 보장
③ 시민의 기본권(환경권, 물 인권) 보장

※ 마지막으로 통계 분류를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자의 특성 정보 및 통계 분류를 위해 작성해 주신 응답 내용은 연구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 변수로만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다른 용도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귀댁에는 귀하를 포함하여 몇 분이 함께 살고 계십니까? ▶ 본인 포함 총 ()명

Q2.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단독/다가구 ② 연립/빌라/ 다세대
- ③ 아파트 ④ 기타 ()

Q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유형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경영/관리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전문기술직
- ⑤ 판매/서비스직 ⑥ 생산직 ⑦ 자영업 ⑧ 전업주부
- ⑨ 학생 ⑩ 기타 ()

Q4. 귀 댁의 월평균 가구소득(경제활동 세대원의 소득 총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 원 ③ 200~299만 원
- ④ 300~399만 원 ⑤ 300~399만 원 ⑥ 300~399만 원
- ⑦ 600~699만 원 ⑧ 700만 원 이상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